

2021년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사업화지원(기업지원)(대전) 규제자유특구사업자 사업화지원사업 공고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감염병관련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등의 조기 시장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사업화지원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일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1 개요

- ☐ (사업명)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사업화지원(기업지원)(대전)
- ☐ (사업목적)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의 지역 바이오기업의 신속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조기 시장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2 지원내용

- ☐ (지원대상)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사업자(2차 추가)*
 - 수혜기업은 특구사업자이어야 하며, 지정된 일부사업에 한하여 간접지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이때 서비스 공급기업은 특구사업자가 아니어도 가능함

*【규제자유특구사업자】

- (관련근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정의)의 15호

15. "규제자유특구사업자"란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와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를 말한다.

- ☐ (지원기간) 2021. 03. 01 ~ 2021. 10. 31(8개월)

- ☐ (지원내용) 3개 세부사업 ※ 수요에 따라 세부사업 선택·구성

구분	① 시설활용비 지원	② 시험(효능시험, 재료비)지원	③ 수요 맞춤형 사업화 지원
지원목적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치료를 위한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등의 개발을 위하여 고위험병원을 분당받아 개발기술의 효능평가 및 독성평가 실시를 위한 시설활용비를 지원	기초연구 및 전임상단계 개발 제품의 약리, 활성 및 독성평가, 비임상 유효성/안정성 평가 지원으로 상용화 촉진	특구사업자의 신속한 사업화지원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제공으로 효과적인 실증과 상용화 지원
지원대상(수혜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사업자(2차 추가 특구 기업)		
지원규모	※ 총 지원금 49.5백만원 이내에서 특구사업자의 수요에 따라 세부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함 총 99,000천원/ 9건 내외	총 385,000천원/ 11건 내외	총 110,000천원/ 11건 내외
기업 부담금	총 사업비의 20% 이상(총 기업부담금의 현금 부담은 40% 이상)		
지원방식	간접지원*	직·간접지원*	직·간접지원*
지원내용	충남대학교병원 내 고위험병원체 공용연구시설 구축 전까지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BL3등급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지원	기초연구 및 전임상단계 개발 제품의 독성평가, 유효성, 안정성 평가 비용 및 평가시 필요한 재료비 지원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매뉴얼과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자율적 구성

* (간접지원방식) 수혜기업(특구사업자)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공급기관(업)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하며 사업비는 서비스 공급기관(업)으로 지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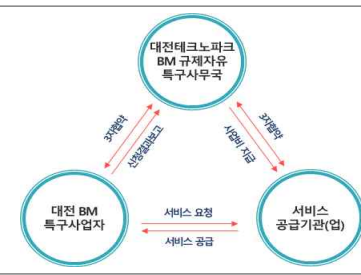
3 추진방식

- ☐ (신청방법) 세부사업별 지원방식에 따라 상이

구분	① 시설활용비 지원	② 시험(효능시험, 재료비)지원	③ 수요 맞춤형 사업화 지원
지원방식	간접지원	직·간접지원	직·간접지원
신청방법	특구사업자 단독 청구	특구사업자 단독 또는 시험평가 지원 공급기관 컨소시엄 구성·신청	특구사업자 단독 또는 사업화 서비스 공급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신청
협약방식	2자 협약 (대전TP-특구사업)	2자·3자 협약 (대전TP-특구사업자-서비스 공급기관)	2자·3자 협약 (대전TP-특구사업자-서비스 공급기관)

- ☐ (수행절차)

	내용	주체	일정
① 사업공고		대전TP	1월중
② 사업신청		특구사업자·공급기관(업)	2월중
③ 선정·협약		대전TP-특구사업자·공급기관(업)	2월말
④ 사업수행		특구사업자·공급기관(업)	3~10월
⑤ 결과보고		특구사업자	11월
⑥ 최종평가		대전TP	12월초
⑦ 사업비지급		대전TP	12월초
⑧ 사후관리		대전TP	~'22.12월



※ 2차 협약(시설활용비 지원, 수요맞춤형 지원 및 책임보험료)의 경우, 사업비는 대전TP에서 특구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함
 ※ 사업비지급 시기는 특구사업자별 사업수행 종료 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추진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법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 [운영요령]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 [준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보안관리요령,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평가방법) 지원 적합성 서면평가

- (평가기준) 계획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합성, 기대효과 등
 ※ 세부사업별 별도의 평가기준을 통해 검토

4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1. 1. 25(월) ~ 2. 5(금) 18:00까지
- 신청기간 : 2021. 1. 25(월) ~ 2. 5(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접속(<http://pims.djtp.or.kr>) → 기업회원 로그인(사업자등록번호)
 → 사업 공고문 신청 버튼 클릭 → 주요 항목 작성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업로드 완료
 → 최종신청

* 개인회원 과제 신청시, 기관 정보 연동에 필요한 기관회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 시스템 담당자에게 연락 바람(042-930-4881~2)

□ (접수서류)

- 사업계획서 날인본 1부
- 사업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혜기업, 서비스 공급기관(업)) 1부
- 서비스 공급 견적서 1부
- 서비스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및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기업에 한함) 각 1부

5 기타 및 문의처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지원 적합성 검토 시 주요 자료로 활용되므로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 요망.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제외 및 지원규모, 내용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결과는 개별통보 예정

□ (문 의 처)

- 담당자 : 대전테크노파크 BM규제자유특구사무국 김영애 책임연구원
 - Tel. 042-930-4719, Fax. 042-930-4789, E-mail. yakim@djtp.or.kr
- 주 소 :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62
 대전바이오벤처타운 BM규제자유특구사무국(106호)